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70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민전·김용태·박상웅

주진우 • 박덕흠 • 박수민

김석기 • 인요한 • 김상욱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 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로 한다.

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립대학치</u>	제1조(목적) <u>국립대학치</u>				
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u>하</u>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u>통하여</u>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②				
때에는 <u>교육부장관</u> 의 인가를	<u>보건복지부장관</u>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	2				
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					
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					
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					
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					
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 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 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 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 ⑥ (생 략)
-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략)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 ⑦ (생 략)

<u>보건복지부장관이</u>
③
<u>보건복지부장관</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출연금 등) ① (생 략)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u>보조</u> 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 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 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제17조(줄연금	등)	(1)	(현행고	ł	같
음)					
2					
				보	조
<u>한다</u> .					

- 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 · 관리-----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감독) <u>교육부장관</u>은 치과 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 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u>보건복지부</u>
장관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독) <u>보건복지부장관</u>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ㅁ 고 변 키 변 지 코
<u>보건복지부장관</u>
 .